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을 폐지하여 배정하고, 정책교육국의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국가인권교육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조정하면서 정책교육국의 명칭을 정책협력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25. ~ 5.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 둔다.

② 사무처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교육원으로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둔다.

③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8조의 제목 “(정책교육국)”을 “(정책협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교육국장”을 “정책협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교육국”을 “정책협력국”으로,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를 “국제인권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권 관련 자료·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6.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8. 간행물의 관리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국가인권교육센터)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원장을 말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평가
2.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의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8. 인권교육 교수법 및 평가체계 등에 관한 연구
9.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연수과정의 운영
10. 국가인권교육센터 청사 및 교육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인권교육과정의 개발·관리

3. 국가인권교육센터 주관 인권교육과정의 운영

4.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관리

5.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5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3)부터 5)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6월 30일”을 각각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 둔다. ② 사무처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교육원으로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둔다. ③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8조(정책교육국)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교육국장 밑에 교육협력심의관을 두며, 교육협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협력심의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제8조(정책협력국) ① 정책협력국장----- -----. <삭 제> <삭 제> ④ 정책협력국----- ----- 국제인권과 ----- -----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 ⑦ (생략)

⑧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계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
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
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

⑤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8. 인권 관련 자료·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9.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10.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11. 간행물의 관리

12.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⑨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관리

3. 인권교육과정의 개발·운영

4.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연수과정의 운영

5.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⑩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⑩ -----
-----.

1. ~ 4. (현행과 같음)

5. 인권 관련 자료·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6.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8. 간행물의 관리

제9조의4(국가인권교육센터)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원장을 말한다)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 협력 및 시행 · 평가

2. 인권교육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조사 ·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 · 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 · 협력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 · 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의 개발 ·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8. 인권교육 교수법 및 평가체계 등에 관한 연구

9.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 · 관리 및 연수과정의 운영

10. 국가인권교육센터 청사 및 교육시설 운영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
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2. 인권교육과정의 개발·관리

3. 국가인권교육센터 주관 인권
교육과정의 운영

4.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
성과정의 운영·관리

5.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
·관리

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
에 관한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28